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관리운영계약

이레일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2017.09.01

##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1 조 용어의 정의.....	2
제 2 조 해석.....	9
제 3 조 제목.....	10
제 2 장 사업시행자, 운영자 및 하수급인의 관계.....	11
제 4 조 운영자의 지위.....	11
제 5 조 하수급인.....	11
제 3 장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11
제 6 조 서비스의 범위.....	11
제 7 조 운임의 징수.....	12
제 8 조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3
제 9 조 책임운영.....	14
제 10 조 유지관리.....	14
제 11 조 설비, 도구 및 재료.....	15
제 12 조 세금 및 인건비.....	15
제 13 조 안전.....	16
제 14 조 환경 및 폐기물관리.....	16
제 15 조 긴급상황.....	16
제 16 조 인허가.....	16
제 17 조 기록.....	17
제 18 조 보고.....	17
제 19 조 보험.....	18
제 20 조 공공요금.....	18
제 21 조 감사권.....	18
제 22 조 실시협약.....	19
제 23 조 민원의 처리.....	19
제 24 조 운영계획의 수립.....	19
제 25 조 운영 및 유지보수.....	20
제 26 조 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관리.....	22
제 27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2
제 28 조 직원의 채용 및 관리.....	23
제 29 조 직원 교육 및 훈련.....	24
제 30 조 하도급.....	24
제 31 조 하자보증.....	25
제 32 조 대체투자.....	26

제 33 조	시운전.....	27
제 34 조	본건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준.....	27
제 35 조	권리의 제한 또는 담보권 없음.....	28
제 36 조	예정되지 않은 폐쇄 및 긴급상황시의 조치.....	28
제 37 조	손해배상.....	29
제 38 조	운영대가.....	29
제 39 조	청산·해산 등.....	30
제 40 조	운영자 이행보증 등.....	30
제 4 장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	31
제 41 조	지시 및 통제.....	31
제 42 조	지 급.....	31
제 43 조	정보의 이용.....	31
제 44 조	정부 인허가 및 승인.....	31
제 45 조	세 금.....	32
제 46 조	문서의 검토.....	32
제 47 조	법령 등의 준수.....	32
제 48 조	본건 시설의 인도.....	32
제 49 조	운영자의 무상사용.....	33
제 5 장	사업시행자의 운영대가 지급.....	34
제 50 조	계약금액.....	34
제 51 조	지급 방법 및 절차.....	35
제 52 조	지급의무불이행.....	37
제 6 장	계약기간 및 해지.....	37
제 53 조	계약기간.....	38
제 54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38
제 55 조	계약의 해지.....	39
제 56 조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42
제 57 조	운영자의 해지 이후의 의무.....	42
제 7 장	면 책.....	44
제 58 조	일반적인 면책.....	44
제 59 조	계약이행보증금.....	46
제 60 조	법령.....	47
제 61 조	사업시행자의 재산.....	47
제 8 장	진 술.....	47
제 62 조	운영자의 진술사항.....	47
제 63 조	사업시행자의 진술사항.....	49

제 9 장 불 가 항 력.....	50
제 64 조 불가항력.....	50
제 65 조 불가항력의 제거.....	51
제 10 장 보 험.....	51
제 66 조 보험.....	52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보험에 대한 권리.....	53
제 68 조 보험 관련 의무.....	54
제 11 장 기 타.....	54
제 69 조 지적재산권.....	55
제 70 조 완전한 합의.....	56
제 71 조 계약의 변경.....	56
제 72 조 통지.....	56
제 73 조 분리성.....	57
제 74 조 양도.....	58
제 75 조 불포기.....	59
제 76 조 준거법.....	59
제 77 조 분쟁의 해결.....	59
제 78 조 파트너쉽 불인정.....	59
제 79 조 후속적 손해.....	60
제 80 조 적용의 제한.....	60
제 81 조 실시협약 관련 의무.....	60
제 82 조 기밀유지 및 자료보호.....	61
별첨 1 관리운영회사의 업무 범위.....	65
별첨 2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시기.....	67
별첨 3 운영대가의 산출기준.....	68

# 관리운영계약

본 관리운영계약(이하 “본 계약”)은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레일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이하 “운영자”, 사업시행자와 운영자를 총칭하여 “당사자(들)”) 간에 2017 년 09 월 01 일자로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다.

## 전 문 :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아래에서 정의됨)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의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한다.



운영자는 실시협약, 실시계획, 운영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아래에서 정의됨)등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운영자는 운영자에 의한 본건 서비스의 제공 조건을 명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가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경우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서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본 계약에 사용된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관리운영기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6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관리운영권”이란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6 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기타설비”란 대여설비 이외에 본건 시설의 관리에 필수적인 일체의 장비, 기기, 기구, 가구, 비품 및 기타 물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긴급상황”이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건 시설 또는 본건 시설 내에 사람 또는 재산의 안전이나 안녕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초래되는 사유 또는 상황을 말한다.

“대여설비”란 제 49 조(운영자의 무상사용)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대주단”이란 대출약정서상 대주가 되거나 동 약정서상 대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의 자를 총칭하며,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자산이나 설비 등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 또는 개량하기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대출약정서”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체결한 금일조칠천사백사십팔억칠천만원(₩ 1,744,870,000,000)의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를 말한다.

“본건 부지”란 본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유지,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지 전체를 말한다.

“본건 서비스”란 제6조(서비스의 범위)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본건 설비”란 대여설비 및 기타설비를 총칭하여 말한다.

“본건 시설”이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는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함)로서, 실시협약 및 본 계약에 따라 운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인도받은 시설을 말한다.

“본 계약”은 본 관리운영계약 본문 및 별첨(이의 변경, 개정, 수정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본 사업”이라 함은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건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란 실시협약 제 70 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선량한 시설관리”란 당해 결정이 내려질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또는 합리적인 면에 비추어 볼 때 알려졌어야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행함에 있어, 법률, 규정, 기준, 설비제조업체의 자문, 관행, 방식 및 조치(O&M 업계에서 사용하거나 승인한 관행, 방식 및 조치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를 말한다. 본건 시설과 관련하여 선량한 시설관리란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본건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본건 설비를 사용하는 업무
2. 본건 시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 관리담당인력을 배치, 운용하는 업무
3. 특정 설비, 기구의 조작에 능숙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운영방식으로,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인 관리 및 보수를 적시에 행하는 업무



4. 본건 설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및 시험을 행하는 업무

5. 본건 설비를 안전한 방식으로 가동하는 일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정기준일(2006년 6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계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단,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산정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추후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실시계획”이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첨부서류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한다.

“실시협약”이란 사업시행자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본문, 별표 및 부록(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을 말한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또는 한국에서 사업자의 영업의 휴무일로 지정된 날 이외의 날을 말한다.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예정된 유지관리”란 본건 시설에 대하여 예정된 정기적인 정비, 수선 및 보수업무 등을 말하며, 예정된 유지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사업시행자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예정된 유지관리의 상세 내역 및 일정은 유지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운영개시일”이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본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거나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운영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운영대가”란 본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운영대가에는 유지관리로 인한 비용, 운영설비대체비 등을 포함한 대여설비의 관리비용, 기타설비의 구입 및 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운영자”란 서울교통공사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O&M 자회사를 포함함)을 말한다.

“운영계획서”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46 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실시협약 제반규정 및 관련법률에 의거 매년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는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유지관리계획서”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46 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포함한 실시협약 제반규정 및 관련법률에 의거 매년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는 유지관리계획서를 말한다.

“인허가”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또는 제반 공급시설회사로부터 요구되는 허가, 승인, 면허, 인가, 특허 또는 기타 인허가 등을 의미한다.

“제세공과금”이란 모든 세금, 부과금, 부담금, 수수료, 공제금 또는 원천징수금 등을 의미한다.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실시협약 제 4 조(해석) 제 6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함)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이란 본 사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등록을 불문하고 특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저작권, 의장권, 영업상 비밀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하수급인”이란 본건 서비스의 이행 및 운영자에 대한 본건 설비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당사자를 말하며, 당해 하수급인이 본건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개별적인 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 등을 포함한다.

“행정적 요구사항”이란 해당 법률, 규정, 규칙 및 조례에 따라 본건 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일체의 인·허가, 동의, 면제, 확인, 요구사항 및 승인을 말한다.

“파산”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가 스스로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기타 위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2. 제 3 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위 제 1 호에 정한 절차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육십(60)일 이내에 기각, 각하, 취소 또는 철회 되지 않은 경우
3.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가 위 제 1 호에 정한 절차를 위하여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재인, 기타 위 절차를 위한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선임에 동의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가 제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O&M 자회사”란 운영자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를 말한다.

## 제 2 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아래의 원칙에 의한다.

-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만약 본 계약의 규정과 실시협약의 규정 간에 모순 기타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실시협약, 본 계약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해석하기로 한다.
- ③ 단수 및 복수로 된 용어는 복수의 경우 및 단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④ 본 계약에서 인(人)에 대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는 해당 인(人)의 승인된 양수인 및 승계인을 포함하며, 정부당국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 ⑤ 서면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타자인쇄물, 인쇄물, 석판인쇄물, 사진 및 지속적이며 가시적인 형태로 단어, 형상 또는 표상을 표현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타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 ⑥ 본 계약 등 어떠한 문서나 합의서에 대하여 또는 여하한 법률에 대하여 언급하는 경우 이는 수시로 개정, 변경, 보충 또는 대체되는 바가 포함된 해당 문서, 합의서 또는 법률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 ⑦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지급금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일이 영업일자가 아닌 경우,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다음의 첫 영업일에 해당 지급금을 지급한다.
- ⑧ “본 계약의”, “본 계약에(서)” 및 “본 계약상의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등의 단어 및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본 계약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어느 특정 규정이 아닌 본 계약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 제 3 조      제목

본 계약의 제목은 오로지 편의상으로만 기재된 것으로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지 아니한다.

## 제 2 장 사업시행자, 운영자 및 하수급인의 관계

### 제 4 조 운영자의 지위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독립 계약자로서 본 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 제 5 조 하수급인

운영자는 본건 서비스의 전부가 아닌 어느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업시행자와 하수급인 간에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제 3 장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 제 6 조 서비스의 범위

- ① 운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도받은 본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건 시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일(이하 “본건 서비스”)을 이행하거나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본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시협약, 관련 제반법규 및 규정, 제 34 조(본건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본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동안 운영자가 이행하는 본건 서비스에는 별첨 1(관리운영회사의 업무 범위) 및 본 계약 제 7 조(운임의 징수) 내지 제 33 조(시운전)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③ 운영자와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 7 조      운임의 징수

- ① 운영자는 관리운영기간 동안 본건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
- ② 운영자는 제 1 항에 의거 징수한 운임을 역에서 집계하여 운임수입금 총액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수납대행자에게 인계하고 그 운임수입금의 계산내역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여하한 이유로든 징수된 운임을 인출하거나 운임을 수수료 또는 비용과 상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 ③ 운영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 따라 주무관청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8 조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①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최초 운영개시일 90 일 전까지 작성 및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46 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최초 운영개시일 60 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 및 제 1 항의 계획서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기 50 일 전까지 작성 및 제출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46 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 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사업시행자와 상호 협의한 기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운영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는 실시협약 제 46 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2 항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관리 운영 세부요령”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을 반영하고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 9 조 책임운영

운영자는 본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본 계약에 따른 운영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 10 조 유지관리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예정된 유지관리

운영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예정된 유지관리의 특정 항목을 제안할 수 있다. 예정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사업시행자가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유지관리의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 ②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추가 서비스

관련 법령 또는 본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서비스(이하 “추가 서비스”)는 본건 서비스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운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실질적 또는 필수적인 것으로 합의된 보충적 사안들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추가 서비스의 항목을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추가 서비스의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 ③ 당사자는 본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로 운영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해당 변경 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결정하기로 한다.

## 제 11 조 설비, 도구 및 재료

운영자는 본건 시설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타설비를 구입하고 관리한다. 또한 운영자는 대여설비에 소요되는 운영설비대체비를 포함하여, 대여설비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제 12 조 세금 및 인건비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의 직원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서비스를 수행할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모든 소득, 급여, 수당 및 기타 모든 세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제 13 조     안전

운영자는 본건 시설의 운영이 오염물질을 주위에 방출함으로써 환경 또는 보건과 관련된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본건 서비스가 안전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운영자는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본건 사업장에서 본건 서비스인 운영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 14 조     환경 및 폐기물관리

운영자는 (ㄱ) 모든 환경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ㄴ) 본건 시설의 운영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폐기물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ㄷ) 본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생성 또는 사용된 유해 폐기물 및 유해물질을 외부로 운송, 처리 및 처분할 책임을 진다.

## 제 15 조     긴급상황

본건 시설의 운영 중, 인명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상황의 경우, 운영자는 피해 또는 손실을 예방, 복구 또는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본건 시설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인허가

운영자는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적기에 취득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협조한다.

## 제 17 조 기록

- ① 운영자는 본건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이고 해당 행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 및 보존이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 기록을 해당 법률 및 행정적 요구사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해당 법률이나 행정적 요구사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보다 장기간 기록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분쟁, 중재, 소송과 관련된 기록의 경우, 당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제 18 조 보고

- ① 운영자는 수송수요(량), 이용추세, 발생수입, 보고대상 사건, 안전관리 기록, 유지관리와 보수, 추가 서비스 비용 및 기타 운영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명시한 월별 관리 운영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월의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당해분기 유지관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분기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③ 당해년도 유지관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연간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해야 한다.
- ④ 운영자는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의해 대주단에게 제출이 요구되는 보고서 및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 제 19 조     보험

운영자는 본 계약 제 10 장(보험)에 기술된 범위와 한도내의 보험을 제공하고 유지한다.

## 제 20 조     공공요금

운영자는 용수, 가스를 포함하며 본건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단, 전력요금은 제외한다.

## 제 21 조     감사권

- ① 본 계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부터 2 영업일 이상의 사전 서면통지를 수령한 때,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본건 시설에 대한 물리적 감사를 시행하거나 운영자의 본건 시설의 수익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대가 및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와 관련된 위 장부, 기록, 계좌, 대장 및 기타 서류는 본 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위 감사는 운영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본건 시설의 통상적인 운영 또는 본건 시설과

관련된 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운영자의 위법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감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 22 조 실시협약

- ① 운영자는 실시협약상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숙지하여 이 계약의 이행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기간 동안 본건 시설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하여서,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 제 23 조 민원의 처리

본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은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운영자는 유지관리 및 운영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32 조(민원처리) 제 4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운영계획의 수립

- ① 운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작성하여 임직원에게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정례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거장 등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임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운영계획의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정거장 개방 최소 관리기준
  - 2. 정거장 운영정보의 관리 및 제공 기준
  - 3. 정거장 안전관리 및 청결관리 기준
  - 4. 정거장 운영을 위한 직원배치 및 관리

## 제 25 조      운영 및 유지보수

- 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본건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십(20)일 이내에 결함에 대한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실시협약 제 52 조(성과의 점검) 제 1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일십(10)일(단,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 실시협약 제 52 조 제 1 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간에서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위한 오(5)일을 공제한 기간) 이내 보완하여 사업시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52 조(성과의 점검)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본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예방과 정비를 위한 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계획(이하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사의 통상적인 과업을 벗어나는 개량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비용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본건 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 관련 법령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유지보수계획의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계획
2. 시스템 및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중의 유지보수

3. 각 분야별 유지보수 작업계획
4. 시스템 및 시설물 품질관리(신뢰성)기준

## 제 26 조 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관리

- ① 운영자는 본 사업의 건설단계에서 도출된 위험원(Hazard Log) 중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운영 및 유지보수 절차서에 반영하여 추적관리하여야 하며, 동 위험원을 제거 및 저감해야 한다.
- ② 운영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 중요 사고 및 장애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7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운영자는 본건 시설의 운영 중 이용자와 고용된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조치에 대한 계획(이하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안전계획은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철도운영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야 하고 최소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철도종합안전시행 계획

2. 종합안전점검시행 계획
3. 안전교육계획
4. 비상대응계획
5. 비상대응 종합훈련 계획
6. 철도안전홍보계획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종합안전계획 외에, 운영자는 실시협약(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를 포함함)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직원의 채용 및 관리

- ① 운영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자격과 경험을 가진 직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입인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업무능력을 보유한 자를 신속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직원 채용 시 보안 관련 규정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의 직원은 근무 시 정해진 규격의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운영자의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대체운영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직원 교육 및 훈련

- ① 운영자는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운영자의 직원, 하수급인 및 고용인에 대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례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외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요구에 의한 특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을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지관리 한다.

### 제 30 조      하도급

- ①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본 계약상 제공하여야 할 관리운영의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 ② 운영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된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③ 운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제 3 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의 비용으로 사업시행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④ 운영자는 하수급인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영자가 고용한 하수급인이 노무 및 산업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하도급을 준 업무에 고용된 인력들이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는 각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정보를 수령하기 이전에 제 82 조(기밀유지 및 자료보호)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운영자는 하도급 대상 업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상적인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책임하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31 조      하자보증

① 운영자는 계약기간 동안 운영자가 발주 또는 구매한 물품 및 설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증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증기간은 신호, 통신, AFC, 전력 등 운영을 위한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물품 및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 시점으로부터 3년, 그 외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공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 또는 구매한 물품 및 설비(본건 시설을 포함함)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운영사업자로부터 통보 받는 즉시 공급자(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회사를 포함함)로 하여금 하자 보증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③ 제 2항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고 하자 발견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시공자 또는 공급자의 하자보수를 감독하는 등 하자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 제 32 조 대체투자



- ① 관리운영기간 동안 운영자는 본건 시설 및 본건 설비에 대한 개량 및 대체투자(또는 대수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주요 장비 및 설비에 대한 대체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별첨 2(장비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시기)의 내용을 적용하고, 개량 및 교체여부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운영자는 제 1항에 따라 개량 및 대체투자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3 조 시운전

- ①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의 운영개시를 위한 시험 및 시운전[「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90 호, 이후 개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함)에 따른 공중별시험, 사전준비,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말함, 이하 같음]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등으로부터 승인 및 관련 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운영개시를 위한 종합시험운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60 일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시설물검증시험 시 사업시행자를 지원하여 시스템의 설치 및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운전체계 점검과 직원의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을 시행한다. 단, 차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차량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른 시운전업무의 위탁수수료(이하 “시운전업무 위탁수수료”)명목으로 운영자에게 금이십삼억육천만원(₩2,360,000,000, 부가세 별도)을 한도로 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업무 위탁수수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 및 본 계약 별첨 3(운영대가의 산출기준)에서 정한 운영대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금원으로 정산 및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 제 34 조 본건 서비스 이행을 위한 기준

- ① 운영자는 (㉠) 운영계획서, (㉡) 행정적 요구사항, (㉢) 부속계약, (㉣) 선량한 시설관리, (㉤) 유지관리계획서, (㉥) 실시계획, 및 (㉦) 실시협약 및 (㉧) 본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본건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 ② 운영자의 본건 서비스 이행기준은 본건 시설이 준공시 존재하는 상태 및 제 3 자에 의하여 본건 시설에 대한 보수이행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운영자의 책임에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지시 및 통제에 따른 관리 운영 서비스의 관리 및 이행이 포함된다.

### 제 35 조      권리의 제한 또는 담보권 없음

운영자는 운영자 또는 하수급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야기된 어떠한 권리제한이나 담보권(다만, 법정 담보권 제외)이 설정되지 않는 상태로 본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 36 조      예정되지 않은 폐쇄 및 긴급상황시의 조치

- ① 본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돌연히 폐쇄되거나, 그 외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그러한 사태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를 방지, 회피, 완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즉시 (㉠) 운영자의 조치를 비롯한 상기 사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고, (c)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② 운영자가 제 1 항의 사태를 방지, 완화, 수정,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는 일반 대중의 안전이나 본건 시설에 근접한 구조물이나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운영자는 시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 제 37 조      손해배상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배상한다.

### 제 38 조      운영대가

- ① 운영자가 본 사업의 운영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운영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 다만, 위 초과 비용의 발생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운영자는 동 비용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용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용인정 받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한다.

### 제 39 조 청산·해산 등

운영자는 본 계약상 의무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청산·해산결의, 파산·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 40 조 운영자 이행보증 등

① 본 계약상의 운영자의 지위가 제 74 조(양도)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O&M 자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운영자는 O&M 자회사의 모회사로서 O&M 자회사의 정상적인 관리운영 및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인력, 행정 및 기술을 동원하여 O&M 자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향후 O&M 자회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는 본 항의 이행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O&M 자회사는 매 영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시 당기순이익의 20%에서 50%를 사내유보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제 4 장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

### 제 41 조 지시 및 통제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사업, 전략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부담한다.

### 제 42 조 지급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 제 5 장(사업시행자의 운영대가 지급)에 따라 운영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연체료 포함)을 적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 43 조 정보의 이용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의 본건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사안에 따라 제공받은 운영 및 관리매뉴얼, 준공도면, 사양서, 보증서, 도면, 테스트 결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하는 문서 기타 모든 문서 및 자료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정부 인허가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제 62 조(운영자의 진술사항) 제 3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정부 인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고 보유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 또는 보유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 제 45 조      세    금

사업시행자는 제 12 조(세금 및 인건비)에 따른 운영자의 본건 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운영자가 부담의무를 지는 세금 또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건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세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6 조      문서의 검토

사업시행자가 특정 문서를 조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그러한 조사 또는 검토할 의무가 부과되거나 또는 오류, 결함 또는 기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찾아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당해 문서를 보았을 때 간단한 문의나 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 제 47 조      법령 등의 준수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법령,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48 조      본건 시설의 인도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및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시설을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이 실시협약과 국내의 철도운영 관련 제반규정 및 안전규격에 따라 설계, 건설, 개발 및 준공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49 조      운영자의 무상사용

① 운영자는 관리운영기간 동안 본건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발주 또는 구매한 설비 및 물품 등의 제반 시설물(이하 “대여설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 운영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여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시설의 운영에 제공되는 본 사업의 사업부지
2.     터널, 정거장, 통합사무소 등 토목 및 건축 시설과 그에 부착되어 운영되는 설비 및 물품
3.     신호, 통신, AFC, 전력 등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일체
4.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일체
5.     기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설비비로 구입한 설비 및 물품 등의 제반 시설물로서 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동사용시설물 일체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대여설비를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에 제공한 수량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사업시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성능개선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것은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유없이 누락된 품목에 대하여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최초 구매시 구매단가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④ 대여설비의 품목, 수량 및 단가는 추후 합의에 의한다.

## 제 5 장 사업시행자의 운영대가 지급

### 제 50 조 계약금액

① 운영자는 관리운영기간 동안 별첨 3(운영대가의 산출기준)에 따른 운영대가를 지급받는다.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간에 협의 후 운영대가를 조정하기로 한다.

② (ㄱ) 실시협약상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ㄴ) 실시협약에 따른 어느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 D 등급을 받거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불가 상황이 발생하는 등으로 시설임대료가 감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지급할 운영대가에서 위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ㄱ) 실시협약상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ㄴ) 실시협약에 따른 어느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 D 등급을 받은 것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처리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제 2 항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 제 51 조 지급 방법 및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운영대가를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상 불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또한 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ㄱ) 위 금액 중 금일백만원(₩1,000,000)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ㄴ) 위 금액 중 금일백만원(₩1,000,000) 미만의 금액을 반올림(사사오입)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 운영자는 제 1 항에 따른 운영대가를 다음 분기 개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초일 포함)에 청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실제로 지급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운영대가를 지급한다.
- ③ 계약기간 중 실시협약상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지급할 운영대가에서 위 운영비 감액분 상당액을 차감하여 운영자에게 지급한다.

- ④ 실시협약에 따른 어느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 D 등급을 받거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불가 상황이 발생하여 시설임대료가 감액되는 경우, (ㄱ) 운영자에게 지급할 운영대가에서 그 감액금액을 우선 차감하고, (ㄴ) 감액된 시설임대료가 운영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운영자가 감액된 시설임대료에서 운영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운영자가 제 4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정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운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상기 시설임대료 감액 금액을 제공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의 대주간 체결된 대출약정서상 장기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⑥ 운영자가 상기 제 4 항 및 제 5 항의 의무를 이행한 이후 동 의무의 발생 원인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판명되고 주무관청의 추가 재정지원 또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수취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추가 재정지원 또는 손해배상금의 한도 내에서 운영자에게 환급하기로 한다.
- ⑦ 제 3 항 내지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ㄱ) 실시협약상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운영비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ㄴ) 실시협약에 따른 어느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 D 등급을 받은 것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처리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제 3 항 내지 제 5 항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 ⑧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다음 분기의 성과평가 결과에 의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분기 정부지급금 감액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경우, 동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제 52 조 지급의무불이행

- ① 사업시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운영대가를 지급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만기일로부터 전액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에 대해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담한다(즉, 실시협약 제 63 조(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제 2 항을 준용함).

-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항의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2. 운영자의 책임으로 관리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 제 6 장 계약기간 및 해지

## 제 53 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 및 사업시행자의 청산업무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본건 시설의 조기준공이나 준공 전 사용인가, 기타 실시협약상 인정되는 사유로 관리운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을 한도로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운영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연장된 기간에 대해 적용될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하여 실시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 72 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 54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사업시행자는 제 55 조(계약의 해지) 제 1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운영자는 본건 시설과 관련하여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운영자 소유의 특허 및 모든 내부적인 정보를 승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본건 서비스의 이행을 위하여 본건 부지에 위치한 모든 본건 설비 및 기타 물품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 3 자를 고용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의 본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해지일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계약 조건에 계속하여 구속된다.

하수급인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기타 물품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한 그러한 품목의 정당한 소유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품목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그 품목에 대하여 시가로 보상해 주며, 그러한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하도급업자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품목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이루어진다.

## 제 55 조      계약의 해지

- ①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게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관련 법령, 실시협약,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그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것을 통지 받은 후에도 30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운영자가 해산 또는 청산하거나 운영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서면동의 없이, O&M 자회사의 지분구성이 변경된 경우(본 계약상 운영자의 지위가 제 74 조(양도)에 따라 O&M 자회사에게 이전된 경우로 한정됨)
4. 운영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운영자가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② 운영자에 의한 해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에 관한 통지를 수령한 이후에도 그 채무불이행 상태가 20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단, 사업시행자의 대금미지급이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미지급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함)

2. 사업시행자가 개시한 자발적인 해산의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비자발적인 해산절차가 개시된 후 60 일 이내에 정지, 철회 또는 해제되지 않은 경우
4.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거나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에 의한 해지

주무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이하 총칭하여 “실시협약 해지 등”)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 중 일방(이하 본 제 1 호에서 “귀책당사자”)에게 실시협약 해지 등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귀책당사자에게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 중 일방도 실시협약 해지 등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영자는 상대방에게 30 일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 56 조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운영자가 제 55 조(계약의 해지) 제 2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모든 금액에 부가하여, (ㄱ) 운영자가 본 계약상 또는 법률에 따라 운영자의 직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운영자의 직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이전비용 및 퇴직 비용 일체, (ㄴ) 본건 시설로부터 철수 및 본건 시설과 관련된 작업의 해체와 관련하여 운영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으로 발생한 실비용을 포함하여 해지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운영자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제반 실비용 및 경비 상당의 해약보상금(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제 57 조(운영자의 해지 이후의 의무)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 57 조      운영자의 해지 이후의 의무

제 55 조(계약의 해지)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해지통지서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동 통지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② 해지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모든 주문 및 하도급 계약들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일부 해지된 경우, 해지통지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을 보호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지시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권, 물품 및 기타 자재

2. 본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을 내용으로서, 완성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문서, 정보 및 기타 재산

⑥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계약에 의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이전하여야 하며, 실시협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운영 업무가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실시협약 및 본 계약에 따른 운영 업무에 관련된 인력을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 제 7 장 면 책

### 제 58 조 일반적인 면책

① 운영자는 본인이 직접 또는 운영자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과실, 사기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를 주무관청 및 제 3 자의 청구(손해배상청구, 비용보전청구, 소송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자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ㄱ) 제 3 자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청구, 소송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이로부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하 “면책대상자”)을 면책시키고 면책대상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ㄴ) 면책대상자에게 비용, 손해 또는 손실(이와 관련한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비용 및 소송비용을 포함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 및/또는 보상하기로 한다. 단, 면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시협약 등과 관련하여 면책대상자가 주무관청에 손해배상, 금전지급,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2. 면책대상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손실보상, 금전지급 기타 여하한 형태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3. 면책대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에게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을 조사하거나, 재판 등에서 변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여하한 비용, 수수료 및 경비와 그와 관련된 법률 자문료, 수수료 등 여하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③ 운영자는 제 2 항에 의한 면책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 및 보장한다.

1. 본 장에 의하여 운영자가 면책대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면책의무는 운영자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면책의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의무이다.

2. 운영자는 본 계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시행자가 본 계약상의 운영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실시협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대인상해, 사망 또는 운영자, 운영자의 대리인, 고용인 및 직원의 재산에 끼친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 손해, 채무, 손해, 경비, 비용, 요구, 판결 및 모든 종류의 소송원인이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고의나 과실로부터 기인되는 경우, 운영자, 그 파트너, 계열회사 및 그들 각각의 대리인들,

고용인, 임원, 이사, 주주, 직원, 승계인 및 양수인을 그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면책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1. 운영자가 면책대상자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인하여 손해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면책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제 59 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운영자는 본 계약의 관리운영기간 동안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별첨 3(운영대가의 산출기준)에 명시된 계약금액 총액(불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이행(계약)보증보험 또는 현금을 본 계약 체결 후 운영개시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 보증기간은 관리운영기간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기간 중 (ㄱ) 제 55 조(계약의 해지) 제 1 항에 따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ㄴ) 운영자가 제 55 조(계약의 해지) 제 3 항에 따른 귀책당사자에 해당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제 1 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 1 항에 따른 이행(계약)보증보험 또는 현금을 운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제 60 조      법령

운영자는 환경관련 허가 또는 기타 행정적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본건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본건 시설을 운영한 결과 사업시행자 또는 본건 시설에 대하여 부과된 모든 벌금 및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시를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벌금 및 과태료는 제외한다.

## 제 61 조      사업시행자의 재산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건 시설 또는 사업시행자의 기타 재산에 손실이나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 8 장   진   술

## 제 62 조      운영자의 진술사항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을 진술한다.

- ① 지위

운영자는 한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운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전권을 가지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본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은 운영자의 일체의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수권 받았으며, 법률, 운영자의 정관 또는 기타 운영자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재산이 귀속되거나 영향을 받는 계약, 협정 또는 증서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② 법률에 대한 위반 없음

운영자는 그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그것이 개별적으로든 또는 총체적으로든 영향을 주는 관련 법률 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③ 라이선스



운영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예정된 본건 서비스를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요구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승인, 허가 및 기타 인가에 대한 보유자이고,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④ 소송

운영자는 그가 알고 있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그의 능력에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정, 중재, 조사 및 기타 소송 절차나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우려가 없다.

## 제 63 조      사업시행자의 진술사항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을 진술한다.

### ① 지위

사업시행자는 한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인이다.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전권을 가지며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본 계약의 체결, 교부 및 이행은 사업시행자의 일체의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수권받았으며 법률, 사업시행자의 정관 또는 내규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기속되거나 영향받는 계약, 협정 또는 증서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② 법률에 대한 위반 없음

사업시행자는 그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그것이 개별적으로든 또는 총체적으로든 영향을 주는 관련 법률 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 ③ 라이선스

사업시행자는 계약기간동안 본건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승인, 허가 및 기타 인가에 대한 보유자이고, 앞으로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 ④ 소 송

사업시행자는 그가 알고 있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그의 능력에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정, 중재, 조사 및 기타 소송 절차나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우려가 없다.

## 제 9 장 불 가 항 력



### 제 64 조 불가항력



- ①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운영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증가된 비용이 보험이나 주무관청의 부담으로 운영자에게 보전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협약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액되거나 보상을 받은 운영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운영자에게 추가 지급한다.

② (ㄱ) 당사자는 발생한 사유의 상세를 명시하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서면 통지를 사유발생사실을 안 직후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며, (ㄴ) 의무이행의 중단은 해당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기간과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ㄷ) 불이행 당사자는 자신의 이행불능을 치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ㄹ) 불이행 당사자가 본 계약상 자신의 의무수행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서면 통지를 송부하고, (ㄴ) 해당 불가항력은 고의적인 또는 부주의한 행위, 과실, 부작위, 또는 법률, 규칙, 규정, 명령 또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 제 65 조      불가항력의 제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운영자의 본건 서비스 이행을 중지시키거나 지연시킨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운영자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불가항력의 발생 또는 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의 재량으로 운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후에 운영자의 비용으로 그러한 불가항력의 발생 또는 그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후 본건 서비스의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이행을 재개할 것을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0 장 보 험

## 제 66 조      보험

보험컨설턴트에 의한 포괄적인 보험의 체결 및 그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의 보험에 가입한다.

### ① 사업시행자가 가입하는 보험

- 1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이하 “사업시행자 가입보험”)을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가입보험의 피보험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3      사업시행자 가입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고(이하 “본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운영자는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운영비용 증가분의 분담 및 보전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대하여 대리은행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
  
- 4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본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가입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상된



보험료의 납입시점에 상응하는 운영대가에서 인상된 보험료(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의미한다)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 ②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

- 1 사용자 책임 보험
- 2 국민 건강 보험
- 3 고용 보험
- 4 업무용 차량 및 장비 책임 보험
-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보험

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운영자 및 사업시행자는 그 보험료를 각자 지불함을 명확히 한다. 본 계약에 따라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운영대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보험에 대한 권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달리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보험을 가입하며, 운영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할 지급금으로부터 동 보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1 운영자가 제 66 조(보험) 제 2 항에 규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 2 운영자가 요청시에 (사업시행자가 허락하는 방식으로 인증된) 제 10 장(보험)와 관련하여 갱신 증명서 사본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제 68 조 보험 관련 의무

- ①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보되어야 하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들은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보되어야 하는 보험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손상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11 장 기 타

## 제 69 조      지적재산권

- ①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라이선스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권한을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운영자가 제 1 항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제 3 자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료, 문서, 도면, 소프트웨어 등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는 운영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운영자는 위 자료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 3 항의 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제 3 자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운영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침해 주장이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자료나 정보를 사용한 결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일체의 저작권, 특허권 또는 상표권, 라이선스(License)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제 69 조(지적재산권)

제 1 항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결과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0 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그 합의 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완전히 양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사전 합의 및 약정을 대체한다. 구두로 된 약정 또는 조건은 없으며,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진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제 71 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2 조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락된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및 기타 통신은 그러한 통지, 요청, 요구 또는 통신을 발송하는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행하며 인편으로 송달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 전송으로 다음의 주소로  
행한다.

사업시행자: 이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주빈

전 화 : 031-313-1481

팩 시 밀 리 : 031-315-1480

운 영 자: 서울교통공사

대표이사: 김태호

전 화 : 1577-1234

팩 시 밀 리 : 02-6311-4381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통지를  
행함으로써 통지, 요청, 요구 및 기타 통신을 송부하거나 송달할 주소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된 통지, 요청, 요구 및 기타  
통신은 인편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된 일자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경우 전송된  
일자에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된 경우 한국 우편에 접수된 후 3 일째 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73 조 분리성

본 계약에 포함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 항 및 조의 무효는, 본 계약의  
중대한 목적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74 조 양도

- ①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는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대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출약정서상 대주들에게 본 계약상 권리 및 지위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이에 동의하며, 운영자는 대출약정서상 대주들이 요구하는 승낙서의 제출 등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모든 약정 및 조건은 본 계약의 당사자들 및 이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③ 운영자는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운영자가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립한 자회사(이하 “O&M 자회사”)에게 본 계약상 자신의 지위를 이전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운영자가 동 조항에 따라 계약상 지위 이전청구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 이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 및 대주단의 불승인 또는 승인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운영자가 제 3 항에 따라 O&M 자회사에게 본 계약상 운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운영자는 제 40 조(운영자 이행보증 등)에 따른 의무 이외에는 본 계약에 따른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75 조 불포기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의 이행을 강제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존속기간동안 그 조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본 계약 또는 계약의 어느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후 어느 당사자가 어떤 또는 각각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 76 조 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 제 7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해지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본 계약의 해석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 및 그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당사자들간의 합리적이고도 평화로운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당사자들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 1 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 78 조 파트너쉽 불인정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사업시행자와 운영자간의 합작투자 또는 파트너쉽이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 79 조 후속적 손해

본 계약에 포함된 다른 상반되는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당사자(임직원 또는 대리인 포함)도 수입의 상실, 자본비용, 영업권의 손실, 운영비용 증가 기타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를 포함한 결과적 또는 간접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80 조 적용의 제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된 내용을 제외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진술, 약정 또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 본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책임 및 구제조치는 계약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한다.

## 제 81 조 실시협약 관련 의무

-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이 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며, 실시협약의 내용이 본 계약에 우선함을 승인한다.
- ②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안전기준 등 법령과 실시협약(이하 총칭하여 본 조에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운영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해당 변경 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결정하기로 한다.

- ④ 본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시협약 부록 1 성과요구수준서를 포함한 각 부록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각 부록에서 정한 사항과 본 계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각 부록에 정한 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제 82 조 기밀유지 및 자료보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아이디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계약의 유지를 위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복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본 계약 조건과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당사자는 자신의 주주, 임직원, 대리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본 조의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 2 항 및 제 3 항에 대해 예외로 한다.

1.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심리,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공개
4. 주무관청 및 상급기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한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전문자문기관(법률, 회계, 세무, 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의 경우

### 제 83 조 민자운영 계약이행보증보험

사업시행자는 민자운영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직접 부보하거나 또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시공회사로 하여금 부보하도록 한다. 민자운영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주요조건은 아래와 같다.

#### ① 부보내용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해지시 해지시지급금으로 대출약정서에 따른 선순위대출원리금 상환에 부족할 경우 해당 부족분을 [금일천칠백팔십억원(W178,000,000,000)]까지 보상.

단, 준공 시점에 총민간투자비가 확정되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실시협약해지시 해지시지급금이 증감하는 경우, 그 증감된 금액만큼 민자운영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조정함.

②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또는 서울보증보험(주)과 동등한 신용등급(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중 둘 이상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의 보증기관.

③ 피보험자: 사업시행자

④ 보험금의 사용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리은행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선순위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함.

(서명란은 다음 장에)



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 당사자들은 첫머리에 기재된 날짜에 그들이 적법하게 수권한 대리인들로 하여금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사업시행자

이레일 주식회사

서명 : \_\_\_\_\_

성명 : 임주빈

직함 : 대표이사

운영자

서울교통공사

서명 : \_\_\_\_\_

성명 : 김태호

직함 : 사장

## 별첨 1 관리운영회사의 업무 범위

1. 본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
2. 본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비용의 산정 및 조정
3.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역무업무, 운임징수 및 납부업무, 노반시설과 관련한 업무전체, 건물시설 관리와 관련한 업무전체, 궤도시설 관리와 관련한 업무전체, 전차선, 전력과 관련한 업무전체, 신호 관리와 관련한 업무 전체, 통신 관리와 관련한 업무전체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나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각종 검사나 점검업무(본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추가로 제정되는 경우에는 동 법령상 제반 검사나 점검업무를 포함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운영자가 운영대가의 조정에 대해 협의함)
5.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상의 기준 준수 및 성과점검·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반 업무(다만 위와 같은 기준 준수 및 성과점검·평가의 대상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

6.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무관청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할 제반 업무 지원
7. 기타 관련 법령이나 실시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제반 업무
8. 위에서 열거한 업무 이외에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제반 업무

## 별첨 2 장비 및 설비에 대한 투자 시기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2008.12. KDI(공공투자센터)]

구분	시설										
	노반				궤도	건물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	기계
	토공	교량	터널	역							
내용 년도	80	60	60	60	25	60	20	20	20	20	20

### 별첨 3 운영대가의 산출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분기	운영대가	연도	분기	운영대가
2018	1	2,836	2029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19	1	2,836	2030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0	1	2,836	2031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1	1	2,836	2032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2	1	2,836	2033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3	1	2,836	2034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4	1	2,836	2035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5	1	2,836	2036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6	1	2,836	2037	1	2,836
	2	2,836		2	2,836
	3	2,836		3	2,836
	4	2,836		4	2,836
2027	1	2,836			
	2	2,836			
	3	2,836			
	4	2,836			
2028	1	2,836	계		226,880

	2	2,836		
	3	2,836		
	4	2,836		

주)

- (1) 상기 금액은 2006년 6월 1일 현재 불변가격이며, VAT를 제외한 금액임.
- (2) 실시협약이 변경되어 운영비 및 정부지급금 지급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으로 함.

